

보수교육의 내용·기간 및 방법 등(제9조 관련)

1. 보수교육의 내용

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교육기간, 종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,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교육과정	개 설 강 좌	교 육 내 용 (과 목)
일반과정	상담 실무자 과정	○ 상담이론 ○ 상담구조화 ○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○ 상담원의 소진(消盡) 예방, 자기 치유 ○ 피해자 의료 지원 ○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○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○ 성폭력 관련 법제
전문과정	피해자 프로그램	○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○ 관계형성 ○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○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○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
	행위자 프로그램	○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○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○ 알코올 상담 ○ 자기통제 기술 ○ 대인관계 기술 ○ 의사소통 기술
	상담 전문가 과정 (장애인, 아동, 청소년 등 대상별)	○ 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○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○ 아동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

		○ 청소년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○ 폭력피해 수사·재판 실무
고급과정	상담사례 연구	○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○ (집단)상담실습 ○ 역할연습 ○ 워크숍

2. 보수교육의 기간·방법

보수교육은 2일 이상의 집합교육(숙박 또는 비숙박)을 원칙으로 하며,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3.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

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·사회학·심리학·법학·범죄학·의학·간호학·교육학·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나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·사회학·심리학·법학·범죄학·의학·간호학·교육학·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.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
- 라.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마.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